

# 투자일임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객과 회사간 권리의무관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1 조의 2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 1]에 따른다.

## 제 2 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다만, 적합성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주된 투자전략(Equity Long-only): 투자 비중/국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략으로 주로 미국 상장증권과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며, 상장증권에는 ETF, SPAC 등은 포함되지만 상장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그 밖에 국내 메자닌, 국내 비시장성 자산, 채권 등 편입이 필요한 경우 고객과 사전 논의 후 투자 진행
2. 보조 전략(Event Driven): M&A, 블록딜,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 시장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투자 기회들을 활용, 주식 롱온리 전략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수익 및 초과수익을 추구.
3. 기타 전략 : REPO(RP)매수 등 유동성 현금을 관리하는 전략
4.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위 1~3 호의 자산 합계가 투자일임재산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 3 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 1호 내지 제 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7. 제 1 호 내지 제 5 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운용에 개입하기 위하여 「위탁투자지침」을 작성하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구(이하, '고객의 운용지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운용지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 및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3. 기타 투자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 5 조 (투자일임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1]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후취로 지급하는 수수료.
  2.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에 연동되어 [별지 1]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의 성과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연 1회 후취로 지급하는 수수료
-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지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및 운용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2. 기타 신의성실 위반 등 회사의 명확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③ 고객은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1.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 ④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 ⑤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수익률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⑥ 혼합형, 성과형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본형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제 5 조의 2 (투자일임수수료의 납입)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제 5 조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며, 수수료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은 [별지 2]를 적용한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 ③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계약종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고객과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중도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고객은 중도해지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이 동의할 경우 CMS 출금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제 6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 등 회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계약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고객이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 1 항에 따른 합의 없이 투자일임계약 관련 거래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의 투자일임수수료는 **[별지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 4)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회사는 고객이 제 4 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6) 고객의 계약변경 및 해지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까지 회사가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 7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1]** 계약 세부조건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 8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9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개정 20250212>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 제 10 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 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용성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운용성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8.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9.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10.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11.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12. 매매회전율
13.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4.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15.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기간에 정한 사항

#### 제 11 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 ·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12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제 13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1】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운용결과의 귀속)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재산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 15 조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 증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 3 자의 금전 · 증권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해 대여를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8.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0.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1.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3. 자본시장법, 동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단,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

## 제 16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다.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다.
4.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 및 본 계약서 제 2 조 이외의 금융투자상품 매입이 금지된다.

## 제 17 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의 응모, 유상증자 청약,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및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는 제외
4.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 제 18 조 (업무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19 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자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과의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할 수 있다.

#### 제 20 조 (계약재산의 평가)

제 19 조의 현금 이외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계약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위탁투자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위탁투자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계약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 제 21 조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재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재산의 계산은 제 20 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이하, “배당 등”)이 계약만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 또는 해지일의 투자수익률 및 성과수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정 결과가 제5조의2에 따른 성과수수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 및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거나 납입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CMS 출금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제22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3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제 24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6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 제2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객] 주 소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명) : (인)

[회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39, 3층(도곡동, 린스퀘어)

사업자등록번호 : 824-81-00195

성명(상호명) :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 김두용 (인)

## [별지 1] 투자일임 계약 세부조건

1.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명	
②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
③ 계약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 : 일금 원정 (₩ )</li> <li>- 내역 : 현금 (₩ ) + 증권 (₩ )</li> </ul>
④ 기준수익률	- <u>연 0 %</u>
⑤ 투자일임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수수료율 : 계약금액의 <u>연 _____ %</u></li> <li>- 성과수수료율 : _____ %</li> </ul> <p>※ 투자일임수수료 유형(택 1)<sup>주)</sup>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성과형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주) 성과수수료가 포함된 유형(혼합형/성과형)을 선택할 경우, 기본형(성과수수료 없음) 보다 높은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수수료 납입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⑥ 거래증권사 및 계좌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증권사 : 증권 ( 지점)</li> <li>- 계좌번호 :</li> </ul>
⑦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소 :</li> <li>- 전 화 : (휴대폰 : )</li> <li>- e-mail :</li> </ul>
⑧ "회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일임담당자 :</li> <li>- 수수료납입계좌 : 우리은행 603-334456-18-396 (계좌명 : 머스트자산운용)</li> </ul>
⑨ 서류 등 수령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류 수령 방법 (택 1) :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li> <li>- 투자일임보고서 수령 방법 (택 1)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e-mail) <input type="checkbox"/> 기타( )</li> </ul>
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일임계약은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환오픈형 계약이며, 향후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과세신고는 고객이 직접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함</li> <li>- 제 6 조 제 5 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6%로 정함</li> <li>-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최소 계약금액은 5 억원으로 정함</li> </ul>

## 2.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성 명	담당업무	학력 및 주요경력	자격사항

## 3. 회사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주요주주

주주명	지분율	비고

### ■ 임원현황

성 명	직위 및 업무	비고

## [별지2] 투자일임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 1. 수수료 계산방식

① 기본수수료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계산기간일수 / 365)
② 성과수수료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최종수익률	(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하고, 수수료는 1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

### 2.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방식

#### - 계약금액 변경시

① 기본수수료	A. 계약금액 증액 : 1. ①에 따른 기본수수료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 - 증액된 계약금액 ×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B. 계약금액 감액 : 1. ①에 따른 기본수수료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 - 감액된 계약금액 ×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② 성과수수료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최종수익률	( 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 기준계약금액 ) / 기준계약금액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기준계약금액 : 계약금액의 중도 증액 또는 감액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일평잔

\* 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하고, 수수료는 1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

#### - 중도 해지시

① 기본수수료	A. 고객 요청으로 인한 중도 해지 : 1. ①에 따른 기본수수료에서 미경과일수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계산 후 차감  B. 회사 요청으로 인한 중도 해지: 기본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본 계약 제 6 조의 ②의 사유로 회사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시에 준해서 계산
② 성과수수료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최종수익률	( 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 계약금액 ) / 계약금액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중도해지수수료	- 고객의 해지 요청시 및 본 계약 제 6 조의 ②의 사유로 회사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70% 계약 후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하고, 수수료는 1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

### [별지 3] 업무위탁 현황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위탁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위탁업체명	위탁내용